

영국판례 2

현저한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면책되지 않아

E. Hulton & Co. v. Jones [1910] H. L

사실개요 및 판시사항

어느 신개의 사주경 발행인인 피고들의 신문에 기사작성자나 편집인은 가공인물에 다소 특이한 성명을 붙여 그에게 명예훼손될 만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우연히도 원고의 성명이 그것이었고, 그 기사의 작성자나 편집인들은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기사작성자나, 편집인이나, 피고들이 전혀 원고의 명권을 훼손할 뜻을 갖지 않았음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친구들에 의하면 그들은 그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만약 분별있는 사람들이 기사의 내용을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가 그것을 게재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송상의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항소심판결인(1909) 2K.B 444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Loreburn 판사의 판결이유

본인은 이 사건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당원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명예훼손은 일종의 불법행위이다.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정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사에서 비난을 당한 사람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글을 쓰는 데에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소된 사람은, 그의 내심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뜻이 없었다거나,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도, 만약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라면, 그에 의한 자기방어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원고에게 수치스런 일을 덮어 씌워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글을, 진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출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진정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였으며, 그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호심에 의하여 판정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기재내용이 허위였다면 그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소송상 아무런 방어방법이 없게 된다. 만약 어느 출판물이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그 필자의 본래 의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필자의 본래 의도가 중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래의 공식에 의하면, 명예를 훼손하는 출판물은 남의적인 것이라야 하고, 또 원고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피고는 그것을 최선의 자비심을 가지고 썼다고 입증함에 의하여 악의가 없었음을 변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원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음을 입증함에 의하여 그것이 원고의, 그리고 원고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관하여 똑같이 필자의 의도는 그가 한 행위로부터 추론된다. 그의 자구책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삼가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 판사가 배심원지도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급심에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법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실시하였다. 「여러분들이 평결의 기초로 삼아야 할 진정한 논점은, 만약 지각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되면 그것은 가상적인 사람에 관한 것이었고, 그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표본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혀 소송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떤 실제인물로 추측한다면(물론 원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원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소송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의 사유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위 문구에 법률상 이의가 없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확실히 무겁지만, 나는 당원이 두가지 사정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배심원들이, 만족스런 입증은 없어도, 원고 Jones 씨는 특히 과거 바로 그 신문사에서 일한 바 있었고, 그의 이름은 그 신문과 그 배포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런 상황속 에서 그 기사의 작성 및 게재에 다소간의 과실 또는 그 이 상의 요소가 개재되었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기사가 제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권한은 배심원들에게 있었다. 출판물 특히 신문기사에 관하여, 그것이 찬동을 얻고 보호를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이보다 더 적합한 재판기관은 없다. 만약 배심원들이 언론의 특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고, 신문의 논조가 비판할 만하며,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배심이 그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비록 그로 인한 배상액이 무겁다고 생각되지만,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당원도 그 평결을 조정,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Shaw of Dunfermline 사건의 판결이유

나는 방금 재판장이 개진한 견해에 찬동하고, 특히 그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채택하고 다 : 「문제의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것은 배심원이 판단할 사실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가 공정하고 통상의 뜻으로 해석할 때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되느냐 아니냐 뿐 아니라, 거기서 언급된 사람이 원고를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나는 세 가지 형태로 주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의견이다.

명예를 훼손할 성질의 내용, 즉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적용할 때 그의 명예가 침해될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사용된 연어에 대하여는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있고, 둘째로 사용된 이름은 그에 의하여 독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있으며, 세째로 같은 원칙은 이름의 적시는 없었지만 제반 표현에 의하여 충분히 묘사된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Bourke v. Warren 사건의 판결에서 abbott 재판장이 이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그는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문제는 그 출판물이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원고라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원고를 지적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출판물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를 아는 사람들이 원고가 거기서 지적된 사람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지적이 기사작성자 또는 발행인의 마음속에서 지적된 바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고, 그것은 사용된 용어 자체의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Coleridge 재판장도 Gibson v Evans 사건에서 이 점을 유사 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그는 필자가 무슨 뜻으로 말하려고 한 것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이른바 그 기사내용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밖에 Atkin 판사와 Gorell 판사는 Loreburn 판사의 판시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이 인용되고, 상고인의 상고비용부담으로 상고는 기각되었다.